

# 예 산 총 칙

2025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합 계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,237,308,868 | 367,119,266 |
| 일반회계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11,077,604,936 | 332,328,148 |
| 특별회계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159,703,932  | 34,791,118  |
|      |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        | 1,159,703,932  | 34,791,118  |
|      |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         | 448,403        | 13,452      |
|      |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        | 57,683,771     | 1,730,513   |
|      | 특정자원분·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| 11,349,551     | 340,487     |
|      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           | 558,439,295    | 16,753,179  |
|      |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             | 867,155        | 26,015      |
|      |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            | 5,464,114      | 163,923     |
|      | 소방특별회계                   | 525,032,838    | 15,750,985  |
|      |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           | 418,805        | 12,564  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5,159,749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62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2025년도에 한하여 연도 중 교부되는 국고보조금,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즉시 보고한다.